

개포우성1·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 
예비추진위원장·예비감사 선거를 위한  
선거인명부 열람 공고

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6조 및 「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」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개포우성1·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29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
1. 열람기간 : 2026. 6. 30.(화) ~ 7. 14.(화), 9:00부터 18:00까지  
/ 점심시간(12:00~13:00) 및 주말 제외

2. 열람방법 : 오프라인(공공지원 사무실) 또는 온라인을 통한 열람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오프라인 | 개포우성1·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사무실<br>(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0, 개포우성1·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내)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온라인  | QR코드 또는 URL을 통한 온라인 접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QR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UR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 | <a href="https://consent.wooriga.kr/root?id=2726">https://consent.wooriga.kr/root?id=2726</a> |

3. 열람내용 : 개포우성1·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  
및 예비감사 선거에 사용될 선거인명부의 열람

#### 4. 안내사항

##### 가. 선거권에 대한 사항

-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으며,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

##### 나.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
- 1)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명의변경, 기재내용의 오기·누락 등으로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,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

##### 2) 제출서류

-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(참고 제1호 서식) 및 선거권을 증명하는 서류

##### 다.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

- 하나의 구분소유권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대표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. 만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

※ 1인이 다수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: 선거권 1개 부여

##### 라.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

- 1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 · 대리인 지정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

-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· 직계존비속 ·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
-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
-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

## 2) 제출서류

- 위임장 · 대리인 지정서(별지 제3호 서식)
-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
- 가족관계증명서류(배우자 · 직계존비속 · 형제자매 중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)
- 해외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외거주자의 경우)
-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(법인인 경우)

### 마. 열람에 관한 사항

- 선거인명부는 열람자 본인(선임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)에 해당되는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,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음

### 바.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

- 선거인명부에 토지등소유자의 핸드폰 번호(단독명의자, 대표소유자)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투표 가능 (전자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선거인 정보를 열람하여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여야 함)

### 사. 소유권 변동(매매, 상속 등)에 관한 사항

명부 작성 이후 소유권 변동(매매, 상속 등)이 발생한 경우 열람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자료(등기부등본)을 제출하여야 하며, 확정 공고 이후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

※ 제출서류 중 서식(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,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, 위임장·대리인 지정서 등)은 공공지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, 정비사업 정보몽땅 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함

※ 별 첨 : [전자적 방법]대표소유자 선임동의 및 선거인명부 열람 매뉴얼

## 5. 문 의

- 개포우성1·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사무실(☎02-556-4554, 변동 시 별도안내 예정).
-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☎02-3423-6093) 끝.